

특별소비세법중 개정법률 공포

(법률 제6521호, '2001. 12. 15)

재정경제부

지난해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과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공포됐다. 부탄특소세환급에 대한 부분만 모아 게재한다.

특별소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①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특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동호바목의 세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판매한 가정용부탄의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특별소비세로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 또는 공제절차, 제출서류, 세액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항, 제10조의2, 제18조제1항,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0조의2(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①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특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동호마목의 세액)</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판매한 가정용부탄의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특별소비세로 징수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 또는 공제절차, 제출서류, 세액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